

의안처리상황표	
의안번호	15
건명	행정구역(성북구-노원구) 경계변경 구의회 동의안
발의자	성북구청장
발의연월일	2026년 8월 12일
심사위원회	행정기획위원회
의결결과	2026년 9월 7일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
이송연월일	2026년 9월 8일
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	년 월 일 조례 제 호
<요지> 장위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이 2개의 자치구(성북구-노원구)로 나뉘어있어 주민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	

행정구역(성북구-노원구) 경계변경 구의회 동의안



성 북 구
(자치행정과)

행정구역(성북구-노원구) 경계변경 구의회 동의안

의안 번호	1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 : 2026년 8월
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장위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이 2개의 자치구(성북구-노원구)로 나뉘어 있어 주민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정 사유

노원구 월계동 492-1번지 외 114필지(16,560㎡/장위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일부)를 성북구 지역으로 편입하여 주민불편 해소

나.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 현황

- 사업명 : 장위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(시공사 (주) 대우건설)
- 위치면적 : 성북구 장위동 25-55필지 일대 (104,746㎡)
- 건축계획 : 총 15개동, 1,637세대 (임대 285세대 포함)
 - 성북구 장위3동 : 1,360세대 (1단지 11개동, 1,068세대 / 2단지 203~204동, 292세대)
 - 노원구 월계1동 : 277세대 (2단지 201~202동)
- 사업구역 현황 : 총 786필지, 104,746㎡ / 조합원 564명(성북 470, 노원 94)

사업구역		성북구(장위3동)		노원구(월계1동)	
필지수	면적(㎡)	필지수	면적(㎡)	필지수	면적(㎡)
786	104,746	671(85.4%)	88,186(84.2%)	115(14.6%)	16,560(15.8%)

○ 위치도 / 배치도



다. 자치구간 경계조정 대상

행정구역	법정동	변경전 면적(m ²)	변경후 면적(m ²)	증감 면적(m ²)	다른 지역으로부터 편입		다른 지역으로 이동	
					행정동	면적(m ²)	행정동	면적(m ²)
월계동 (노원)	월계동	4,285,471.7	4,268,911.7	△16,560	-	-	장위동	△16,560
장위동 (성북)	장위동	2,026,219.2	2,042,779.2	16,560	월계동	16,560	-	-

3. 검토의견

가. 장위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의 84.2%가 성북구 장위3동에 위치하고 있으며, 조합도 성북구로 행정구역 일원화를 원함

나. 주민 불편 및 행정서비스 비효율*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 필요

* 쓰레기 수거 및 배출, 택배 배송 등 생활서비스 혼선, 관할 관공서 이원화 등

4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

제6조(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조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)

-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 2.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개발사업 등으로 하나의 건축물, 주택단지나 이에 부속된 시설, 필지 등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분리될 예정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

다.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

제2조(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태조사서와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결과를 제출해야 한다.